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손을춘(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2014. 2. 28.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요 약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정책을 실시한 결과, 2007년 55개이던 인증사회적기업이 2013년 말에는 1,012개로 급증하였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 정책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판로개척 지원 등 간접지원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2013년까지 총 1조 1,019억원의 국가재정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투입되었다.

이 현장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부지원정책에 관하여 사회적기업가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지역간담회 개최, 박람회 참석, 업체 탐방 등을 통하여 얻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정부지원제도의 기본방향이 지닌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가 과도하게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제공 등 균형적인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2) 일자리창출 중심의 제도운영과 연계되어 지나치게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질적 성장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3)획일적 지원정책의 비효율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지원조건 등에서 유형과 업종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정부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가 미흡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한편, 주요 지원제도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사업개발비 사용용도의 경직성 및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비가 사업개발을 위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지원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경영컨설팅이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낮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업체를 선정하고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3)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인식부족과 제도미흡으로 구매실적이 저조하므로 법정구매 목표비율을 설정하는 등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판로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원책이 부족하므로 입법적 개선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유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판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사회적기업에 적합한 대출지원 정책이 미흡하여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대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를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기부와 자원봉사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저조한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을 일자리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높이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차 례

□ 요약

I. 현장조사 개요 / 1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
- 2. 조사의 대상 2
- 3. 조사의 방법 및 내용 4

II. 사회적기업 현황 / 5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도입배경 5
- 2.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7
- 3. 사회적기업의 인증현황 11

III.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 17

- 1. 정부지원제도 개요 17
- 2. 직접지원제도 18
- 3. 간접지원제도 25
- 4. 사회적기업 육성 관리 및 지원기관 26

IV.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 / 29

- 1. 설문조사 결과 29
- 2. 면담조사 결과 38

V.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 50

- 1. 지원제도 전반의 문제점 50
- 2. 개별 지원제도의 문제점 54
- 3.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 61

VI. 지원제도 개선방안 / 63

- 1. 지원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63
- 2. 개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65
- 3.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71

VII. 결 론 / 73

☐ 참고문헌 / 77

☐ 부록 1. 설문조사 방법 및 응답업체 현황 / 78

☐ 부록 2. 설문조사 질문지 / 80

☐ 부록 3. 면담조사 내용 / 89

표 차례

[표 1]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일정	3
[표 2] 연도별 인증 및 취소 현황	11
[표 3] 지역별 현황	12
[표 4] 기업규모(근로자 수)별 기업 수 및 근로자 수	16
[표 5]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요	17
[표 6] 사회적기업의 평균근로자 수 및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 수	52
[표 7] 사회적기업의 기업별 평균 고용인원 수	55
[표 8] 2012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58

그림 차례

[그림 1]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작업장	8
[그림 2]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현장	8
[그림 3] 지역사회공헌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 현장	9
[그림 4] 기타형 사회적기업 현장	10
[그림 5] 조직형태별 현황	12
[그림 6] 유형별 현황	13
[그림 7] 분야별 현황	14
[그림 8] 근로자 현황	15
[그림 9] 기업규모(근로자 수)별 현황	16
[그림 10] 사회적기업 운영 시 겪는 애로에 대한 응답	30
[그림 11] 정부지원 중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정책	31
[그림 12] 인건비 지원 중단이 사회적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응답	32
[그림 13] 4대보험료 지원 중단이 사회적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응답	32
[그림 14] 응답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추구하는 가치	33
[그림 15] 응답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4
[그림 16] 사회적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정부지원정책	35
[그림 17] 정부지원정책 중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정책	36
[그림 18] 지원방법을 달리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	37
[그림 19] 유형과 분야 등 지원방법을 달리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지원내용	37
[그림 20] 지역간담회 현장	38
[그림 21] 사회적기업박람회(킨텍스, '13. 7.1.~7.3.)	39
[그림 22] 대한민국 소상공인 창업박람회(킨텍스, '13.10.9.~10.12.)	39
[그림 23] 창조경제 박람회(코엑스, '13.12.12.~12.15.)	39
[그림 24] 사회적기업제품 공동판매장	40
[그림 25] 사회적기업 업체 탐방	40

I. 현장조사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사회적기업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올해로 7년째가 되고 있음
- ☐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교육·보건·돌봄·간병가사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재정지출을 통하여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국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근로자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 ☐ 2007년 55개였던 인증 사회적기업이 2013년 말 현재 1,012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조 1,019억 1,4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됨
- ☐ 그런데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지나치게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대다수 사회적기업이 정부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지원종료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사회적기업은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한데다 취업취약계층의 직무역량이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로 모색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과도한 정부의존적인 경영환경과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문제가 사회적기업의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3,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 질적 성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본 현장보고서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회적기업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의 대상

-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가 및 사회적기업 관계자를 조사대상으로 함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조사당시 913개소, 이하 “인증사회적기업”이라 함)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¹⁾은 제외함
- 사회적기업가 : 인증사회적기업 대표 및 직원
- 사회적기업 관계자 : 사회적기업진흥원, 중간지원조직, 공동판매장 및

1) 부처형은 120개('13.10월말 현재), 지역형은 1,402개('13.6월말 현재)임

박람회 임원 또는 직원

☐ 세부적인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일정은 [표 1]과 같음

[표 1]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일정

구분		날짜	조사 및 면담 대상자
설문조사		2013.11.11 ~11.22	인증 사회적기업(913개 업체)
면 담 조 사	지역 간담회	2013.12.13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교수 사회적기업희망재단 대표이사 (사)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SESNET) 상임이사 (주)컴윈 대표 (주)오르그닷 대표 다솜이재단 사무국장 (재)행복한 학교재단 대표 은빛등지 원장 (주)노리단 대표 (주)빅워크 대표
	박람회	2013. 7. 1 (킨텍스)	2013 『사회적기업박람회』 참여업체 관계자
		2013.10.12 (킨텍스)	2013 『대한민국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참여업체 관계자
		2013.10.12 (코엑스)	『창조경제 박람회』 참여업체 관계자
	판매장 및 업체 탐방	2013.12.20	36.5스토어(동작점) 및 미니스토어(목동) 직원
		2013.12.30	(주)심원테크 대표
		2013.12.30	리드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대표
		2013.12.31	(주)한국이지론 상임이사

3. 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설문조사의 방법과 내용

- 모든 인증사회적기업(조사당시 913개)에 대해서 이메일('13.11.11, 11.22)과 팩스('13.11.22)를 통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함
- 설문의 내용은 업체 현황과 정부지원정책의 실효성, 정부의 지원종료가 업체에 미치는 영향, 지원방법이나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음

☐ 지역간담회 개최 방법 및 내용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지원현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대학교수, 중간지원조직 임원의 발표와 사회적기업 대표들의 토론 및 면담 방식으로 지역간담회를 개최함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제고 방안’이라는 발표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환경, 간병, 교육, 문화, 벤처, 제조 등)의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각 업종의 애로사항과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

☐ 박람회 참석, 업체방문 및 판매장 탐방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사회적기업가 또는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기업 운영의 애로와 정부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함

☐ 설문조사, 지역간담회, 방문과 탐방 등을 통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II. 사회적기업 현황

1.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도입배경

가. 사회적기업의 개념

- ☐ 사회적기업은 각국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OECD는 사회적기업을 ‘기업가정신으로 조직되며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음
-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로 정의함(법 제2조제1호)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서, 저소득자·고령자·장애인·성매매피해자·경력단절 여성,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장기실업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됨(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예술·관광·운동, 보육, 산림보전, 간병·가사,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청소 등 사업시설, 고용서비스 등을 뜻함(법 제2조제3호 및 시행령 제3조)

나. 사회적기업제도의 도입배경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음.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고용창출능력이 점차 저하되면서, 장기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취약계층이 증가하게 됨
- 1997년 말 외환위기로 대량실업 사태를 맞이한 정부는 대규모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함.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재정지원에 따라 유지되는 임시직으로 최소한의 급여 수준만 보장되는 질 낮은 일자리였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요구가 증가하게 됨
-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2004년에는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됨
- 하지만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단기·임시직의 저임금 일자리만을 창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 모델로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진영의원)과 2006년 3월 「사회적기업 지원법안」(대표발의 우원식의원)이 각각 발의되어, 2006년 12월 8일, 두 법률안을 토대로 마련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2.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 ☐ 법률적으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출 것(「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호 및 시행령 제8조)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법 제8조제2호)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법 제8조제3호 및 시행령 제9조)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으로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30%) 이상일 것(일자리 제공형)

[그림 1]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작업장²⁾



(주)메자닌아이팩



리드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16.12.31까지는 30%) 이상일 것(사회서비스 제공형)

[그림 2]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현장



(주)휴먼케어



(사)충남교육연구소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지역사회 공헌형)

2)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현장사진(그림 1~ 그림 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으로서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16.12.31까지는 20%) 이상일 것(혼합형)

[그림 3] 지역사회공헌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 현장



홍성풀무나누미영농조합



행복한도시락(부산해운대점)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의 유형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정책심의회는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함(기타형)

[그림 4] 기타형 사회적기업 현장



(좌)노리단



아름다운가게

-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법 제8조제4호)
-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30%(‘14.7.1부터 50%) 이상일 것(법 제8조제5호 및 시행령 제10조)
-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법 제8조제6호)
-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합자조합만 해당)(법 제8조제7호)

3. 사회적기업의 인증현황

- 2013년 12월 31일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을 연도별·지역별·조직 형태별·사회적 목적 유형별·분야별·기업규모별로 살펴 봄

가. 연도별 인증현황

-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증이 시작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80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고, 이 중 68개 업체의 인증이 취소 또는 반납되었으며, 현재 1,012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음

[표 2] 연도별 인증 및 취소 현황

(단위 : 개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인증	55	166	77	216	155	142	269	1,080
취소/반납	12	28	3	18	7	0	0	68
현재('13말)	43	138	74	198	148	142	269	1,012
누적 수	43	181	255	453	601	743	1,012	

자료 : 고용노동부

-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5년 생존률(30.2%³⁾)과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의 생존비율은 78%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인증 후 5년이 지난 2007년도 및 2008년도 인증업체의 경우 각각 55개 및 166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고 이중 각각 43개(78.2%) 및 138개(83.1%) 업체가 생존해 있으며, 인증 4년이 지난 2009년도의 경우에도 인증업체 77개 중 74개(96.1%)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음

3)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개발 결과』, 2012.12.27. p.59

나. 지역별 현황

-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212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 170개, 전라북도 64개, 부산광역시 61개, 경상북도 58개, 인천광역시 55개 순임

[표 3]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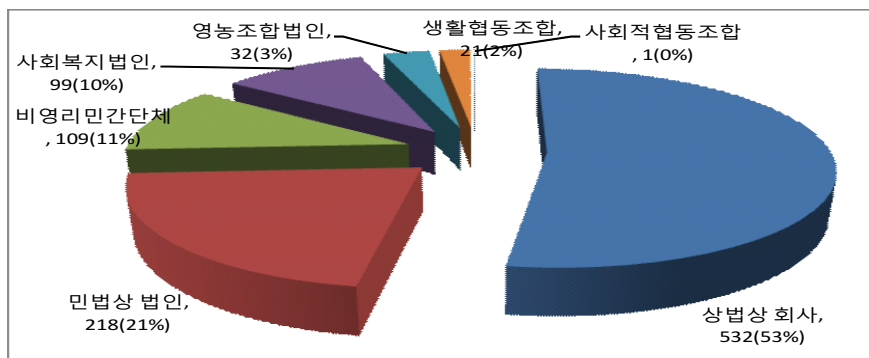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세종	합계
기업수	212	61	44	55	46	28	33	170	47	38	46	41	64	42	58	24	3	1,012
비중	20.9	6.0	4.3	5.4	4.5	2.8	3.3	16.8	4.6	3.8	4.5	4.1	6.3	4.2	5.7	2.4	0.3	100.0

자료 : 고용노동부

다. 조직형태별 현황

-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볼 때, 전체의 53%에 해당하는 532개가 상법상 회사이고, 218개(21%)는 민법상 법인, 109개(11%)는 비영리 민간단체 순이며,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99개), 영농조합법인(32개), 생활협동조합(21개), 사회적협동조합(1개) 순임

[그림 5] 조직형태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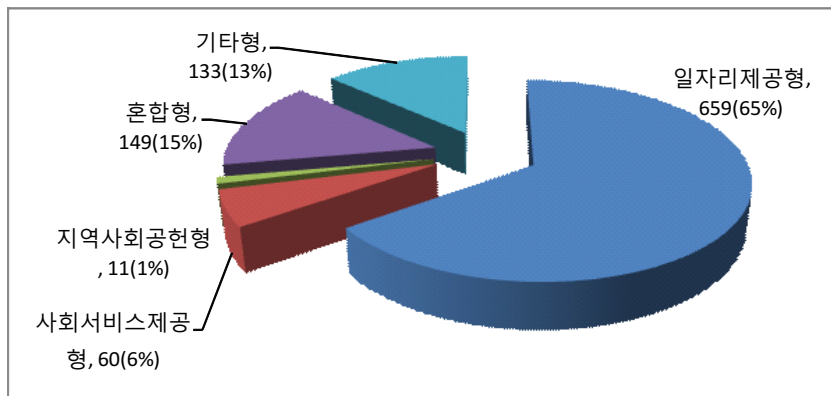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라.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별 현황

-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이하 “유형”이라 함)별로 보면, 일자리 제공형이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659개로 가장 많음. 이에 반해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60개(6%), 지역사회 공헌형은 11개(1%)에 불과함
- 혼합형(149개)과 기타형(133개)도 대부분 일자리 제공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형태가 일자리 창출유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6]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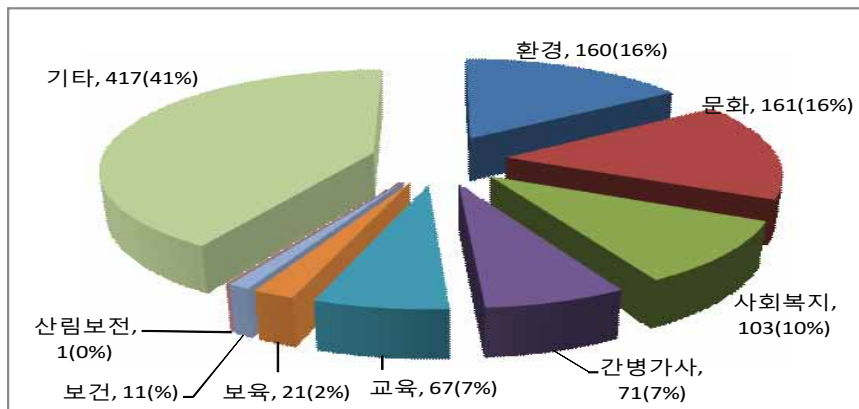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마. 분야별 현황

-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제공 또는 영업활동 분야별로 보면, 문화 161개, 환경 160개, 사회복지 103개, 간병가사 71개, 교육 67개, 보육 21개, 보건 11개, 산림보전 1개임

- 그러나 전체의 약 41%에 해당하는 417개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어서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재분류 하는 것이 정책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그림 7] 분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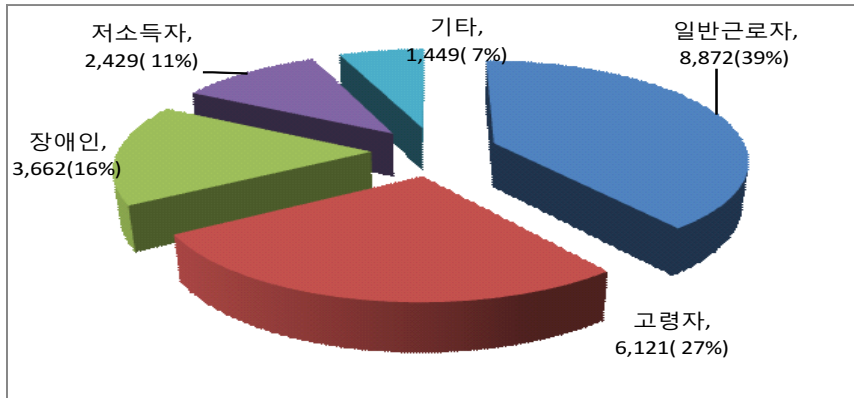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바. 근로자 현황

-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 수는 총 22,533명이고, 이 중 일반 근로자는 8,872명(39.4%), 취약계층 근로자는 13,661(60.6%)명임
-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시 세분화하여 보면, 55세 이상 고령자 6,121명(27%), 장애인 3,662명(16%), 저소득자 2,429명(11%), 기타⁴⁾ 1,449명(7%)임

4) 기타에는 성매매피해자, 경력단절 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피해자 등이 포함됨

[그림 8] 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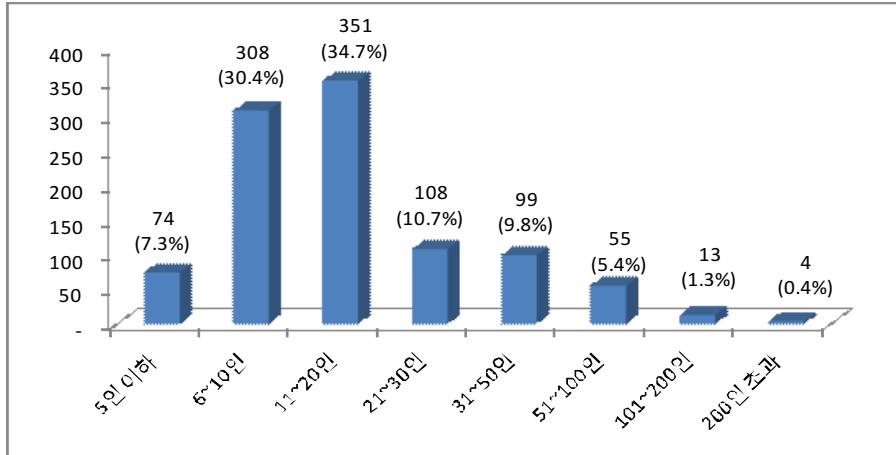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 기업규모(근로자수)별 현황⁵⁾

-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근로자 수가 11인 이상 20인 이하인 기업이 351개(34.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6인 이상 10인 이하 기업이 308개(30.4%)임. 5인 이하 업체(74개, 7.3%)까지 포함할 경우 20인 이하 업체가 72.4%에 해당하는 733개에 달함
- 21인 이상 30인 이하 기업이 108개(10.7%), 31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이 99개(9.8%), 51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이 55개(5.4%), 100인 이상 200인 이하 기업은 13개(1.3%)이며, 200인 초과 기업은 4개(0.4%)에 불과함

5) 현재 기준의 개별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인증사회적기업(1,012개)이 인증신청 당시 제출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근로자수)별 현황을 파악한 것임

[그림 9] 기업규모(근로자 수)별 현황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노사협의회 설립 등 각종 기업관련 정책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인 업체가 전체의 83.1%에 이르고 이들 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도 12.7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이 규모 면에서 영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4] 기업규모(근로자 수)별 기업 수 및 근로자 수

(단위 : 개소)

기업규모	5인 이하	6인~10인	11인~20인	21인~30인	31인~50인	51인~100인	101인~200인	200인 이상	합계
기업수	74	308	351	108	99	55	13	4	1,012
총 근로자수	311	2,462	5,147	2,723	3,959	3,490	1,639	899	20,630
평균 근로자수	4	8	15	25	40	63	126	225	20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III.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1. 정부지원제도 개요

-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별 지원 조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으로 정한 사업별 시행지침⁶⁾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정부지원정책은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표 5]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요

지원제도		지원내용
직접지원	인건비 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인건비(최저임금 수준)
	전문인력 인건비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200만원 한도)
	사업개발비 지원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최대 7천만원 한도)
	경영지원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330만원~2천만원 한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1인당 91천원)
	세제지원 제공	법인세·소득세·취득세·면허세 50% 감면(재산세 25%)
		사회적기업에게 기부하는 금액에 지정기부금 인정
	시설비 등 지원	자금대출(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간접지원	모태펀드	고용부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펀드 조성('12년 40억원)
	공공구매제도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권고
	판로개척	온라인 상품소개사이트 및 공동판매장 구축·운영

6)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2. 직접지원제도

가. 근로자 인건비 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함) 근로자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참여근로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 기업별로 최대 3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1년차 100%, 2년차 90%) 동안, 사회적기업은 3년(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동안 연차별로 차등하여 지급함
 - 지원금은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당해연도 임금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참여근로자별 인건비를 모두 합한 금액에 9% 한도)를 포함하여 지급함

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
- 전문인력이란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기획, 인사, 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 훈련, 회계, 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관련, 무역, 정보, 통신, 컴퓨터, 상품기획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또는 해당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또는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기업 당 1인에 대하여 최대 2년간,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당 3명(유급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함

○ 월 2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 부분을 기업이 연차별로 부담하도록 함

- 자부담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은 1차년도 20%, 2차년도 30%이며, 사회적기업은 1차년도 20%, 2차년도 30%, 3차년도 50%임

다. 사업개발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브랜드(로고),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을 사업개발비로 지원함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A·B·C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액을 차등함

- A유형(창업초기단계) : 사업초기의 인프라 구축 지원 - 1천만원 한도
- B유형(사업정착단계) : 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지원 - 5천만원 한도(예비사회적기업은 3천만원 한도)
- C유형(사업활성화단계) :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등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화 지원 - 1억원 한도(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한도)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받은 사업개발비는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 재료비, 사무용품, 인건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사회보험료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사회보험료 포함)를 지급받고 있지 않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
- 기업규모와 지원인원에 제한 없이 유급근로자 전원(대표, 임원 및 이들의 직계존비속 제외)에 대하여 최대 4년간 지원함
-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 1인당 약 월 91,000원임(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자는 약 37,000원)

마.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라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의 50%를

감면함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함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함
 -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함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경감함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인증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중 의료보건 용역과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과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
- ☐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와 「소득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함
 - 법인은 소득금액의 10%(개인은 30%)를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경영컨설팅 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자립경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기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함

□ 기업의 경영능력 수준에 따라 기초컨설팅과 전문컨설팅으로 구분함

○ 기초컨설팅: 신규로 인증된 사회적기업 또는 컨설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컨설팅함

-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기본현황을 분석하여 ①인사, 노무, 회계, 세무, 법무, 법률분야와 경영개선 등에 관한 경영코칭, ②회계자료 작성·관리 및 관리회계프로그램 보급 등 회계관리 지원, ③신규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워크숍, ④프로보노⁷⁾ 전담 위탁기관과 연계 지원, ⑤조직형태 변경 등 정책연계 컨설팅 등이 있음
- 경영코칭의 경우 연간 3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회계관리 지원은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음

○ 전문컨설팅: 기초 컨설팅 이력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전반 또는 특정과제를 해결하여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함

-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①선발 사회적기업가나 전문가 등의 전문팀이 경영전반을 지원하는 멘토형컨설팅, ②회계, 마케팅, 생산관리 등의 특정분야에 관한 프로젝트형컨설팅, ③일자리사업 종료가 예정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속성장형컨설팅, ④동종분야 또는 동일지역의 사회적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는 공동컨설팅 등이 있음

7)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나온 용어로 의료·교육·경영·노무·세무·전문기술·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의미함

- 멘토형은 1천만원 한도(예비사회적기업은 500만원 한도), 프로젝트형과 지속성장형은 각각 2천만원 한도로 지원됨

사. 시설자금 융자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이나 경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미소금융재단 등의 지원을 받는 복지사업자와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대출함
- ☐ 복지사업자를 통한 자금대출
 - 열매나눔재단 : 전세계 소외계층에 자립의 기회를 열어주는 국제자립개발 NGO로서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함
 - 임대차보증금, 시설·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1억원 이내의 자금을 연 4.5% 수준의 금리로 대출함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저소득, 저신용 등 취약계층에게 무보증·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하고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함
 - 임대차보증금, 시설·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1억원 이내의 자금을 연 3% 수준의 금리로 대출함
 - 함께일하는재단 : 다양한 실직 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교육, 대출 등을 지원함
 - 임대차보증금, 시설·운영자금, 재무구조 개선자금 등의 용도로 1억원 이내의 자금을 연 3% 수준의 금리로 대출함

-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을 통한 자금대출
 -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음(예비사회적기업 제외)
 - 창업기업지원자금 :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하여 각각 연간 30억원 및 5억원 한도로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금리('13년 4.39%)에서 0.82%를 차감한 금리로 대출함
 - 신성장기반자금 : 5년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하여 각각 연간 30억원 및 5억원 한도로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금리('13년 4.39%)에 0.2%를 가산한 금리로 대출함
-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기업 등을 위한 우선보증
 - 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억원을 한도로 영리 사회적기업은 4.6%,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3.7% 금리로 대출함

아. 모태펀드 운영

- ☐ 고용노동부가 출자한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를 통하여 기업·재단 등 민간이 출자자로 참여한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투자지원을 함
- 2011년 42억원(정부 25억원, 민간 17억원), 2012년 40억원(정부 25억원, 민간 15억원), 2013년 60억원(정부 25억원, 민간 35억원)을 결성함
 - 조성된 자금으로 현재까지 총 6건, 19억원이 사회적기업에 투자됨

3. 간접지원제도

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인증 사회적기업의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임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2013년 기준 국가부처(41개), 광역지방자치단체(16개) 및 교육청(16개), 공기업(28개), 준정부기관(82개), 기타공공기관(176개), 지방공기업(130개) 및 기타특별법인(농업협동조합 등 6개) 등 504개 기관이 이에 해당함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해당연도 구매계획, 전년도 구매실적,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매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판로개척 지원

- 사회적기업 제품의 실질적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상품소개물을 구축·운영하거나 공동판매장을 조성하며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수행함
- 진흥원의 홈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생산품 공동구매통합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있음

-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복합매장(스토어36.5 동작점 등)과 숍인숍 개념의 미니스토어36.5(목동 등) 등 전국적으로 25개가 운영되고 있음

다. 홍보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정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지원을 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16조의2)
- 매년 7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박람회 개최, 체험관 운영, 강연 등 사회적기업 주간행사를 실시함
-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주요 언론매체(TV, 라디오 캠페인, 주요일간지, 보도채널 다큐멘터리 협찬 등)와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업무를 수행함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취업 및 창업박람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참여 및 홍보지원을 함

4. 사회적기업 육성 관리 및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총괄)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예산(국고보조금) 배정, 시행지침 제·개정,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의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시행결과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함

- 지방노동관서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업체 심사 선정 참여 및 재심사 선정·지원, 재정지원기관 모니터링 및 점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중앙행정기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심사 및 선정, 관련 운영지침 수립 등 중앙부처 소관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관리함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 광역자치단체 : 일자리사업(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 사업참여 업체 심사·선정,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및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기초자치단체 : 각종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참여기업 접수 및 심사 지원 등)업무를 수행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0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임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에 따라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인증, 정관 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

□ 중간지원조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서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를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시·도별 사업모델 발굴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모델의 수익성·시장성 등 사업화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상시 컨설팅, 경영일반·노무·마케팅 등 분야별 경영자문 및 컨설팅 지원업무를 맡고 있음
- 또한 지역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별 자원연계(지자체, 기업 및 프로보노 등) 활성화 지원과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심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에는 광역단위로 지정된 권역별지원기관⁸⁾ 외에도 소셜벤처 관련 기관, 사회공헌사업 관련 기관, 프로보노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선정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8) 2013. 12. 31 현재, 권역별지원기관 현황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서울), (사)사회적기업연구원(부산/울산), (사)커뮤니티와경제(대구/경북), 광주NGO 시민재단(광주),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대전),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강원),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경기), (사)전남지역발전포럼(전남),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전북), 사단법인 길있는 연구소(경남),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충북),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충남/세종),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제주)

IV.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 ☐ 설문조사는 이메일과 팩스를 통하여 모든 인증사회적기업(913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중 178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함
- ☐ Excel을 이용하여 응답자료를 처리하였으며, 설문에 순위(1~3순위)가 있는 응답에 대해서는 3순위 1점을 기준으로 2순위는 2점, 1순위는 3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집계함⁹⁾

나.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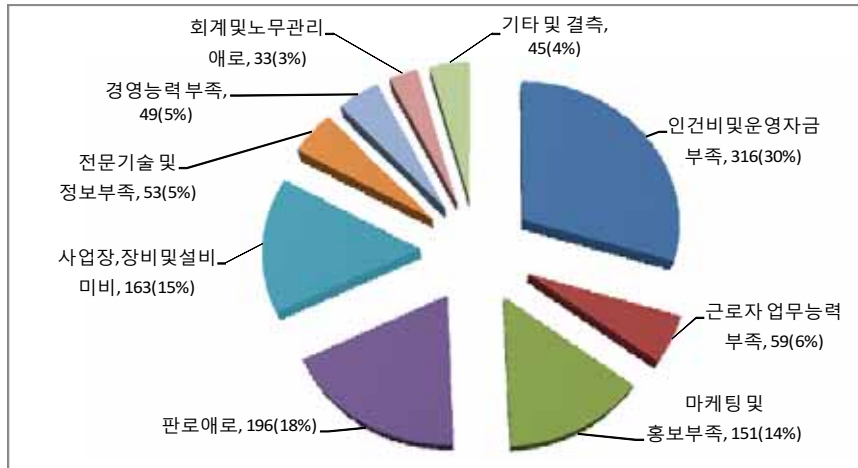
(1) 사회적기업 운영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자금 부족(29.6%), 판로애로(18.4%), 사업장·장비 및 설비 미비(15.3%), 마케팅 및 홍보 부족(14.1%) 순으로 응답함
- ☐ 인건비 및 운영자금 부족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재무상태가 대부분 취약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 또한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 애로, 마케팅과 홍보역량 부족과 사업장, 장비 및 설비도 미비하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

9) 설문조사 방법 및 응답업체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기업의 자립기반이 전반적으로 빈약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음

[그림 10] 사회적기업 운영 시 겪는 애로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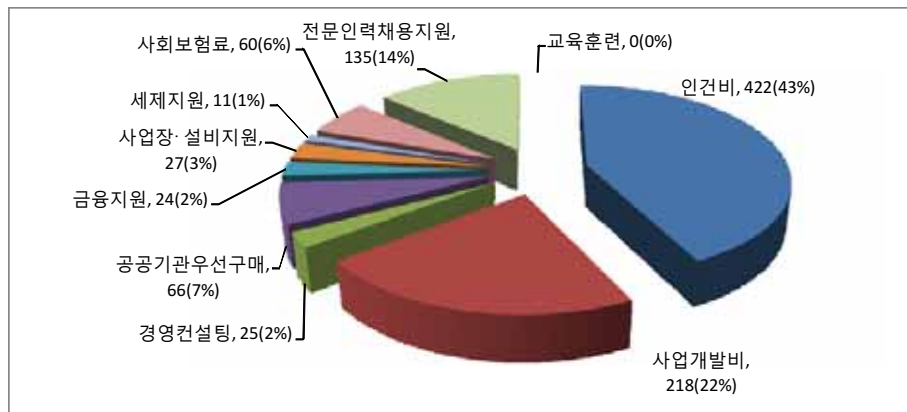


(2) 정부지원 중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정책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 가장 도움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43%가 인건비로 응답하고 있어서,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사업개발비 지원과 전문인력 채용지원도 각각 22%와 14%로서 이들 지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인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7%), 사업장 및 설비 지원(2.7%), 자금대출 등 금융지원(2.2%), 경영컨설팅(2.3%)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0.0%)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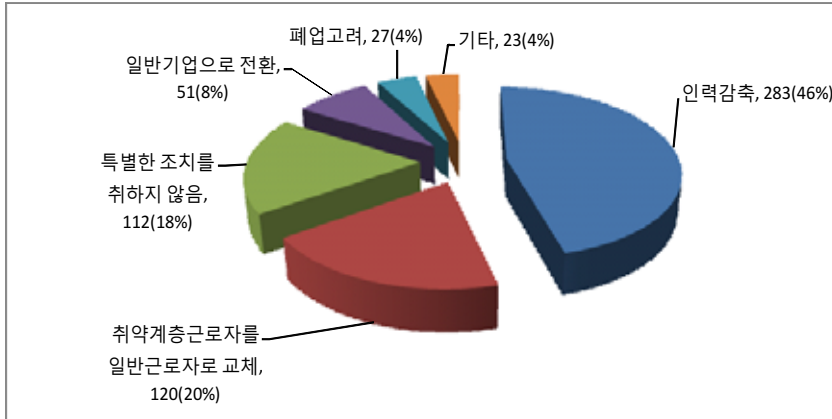
[그림 11] 정부지원 중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정책



(3)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이 사회적기업에 미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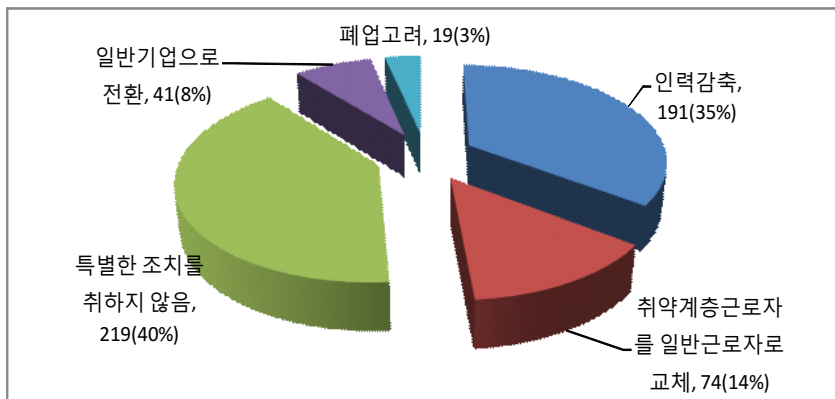
- 정부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
에 대해서, 45.9%가 인력감축을 하겠다고 답하고 있음
-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교체하겠다는 응답이 19.5%, 일
반기업으로 전환과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8.3%, 4.4%로 나
타나는 등 지원받은 업체의 약 80%가 인건비지원 중단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인건비 지원 중단이 사회적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응답



- 한편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4대사회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인건비 지원 중단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약 60%(인력감축 35%, 일반근로자로의 교체 14%, 일반기업으로 전환 8%, 폐업고려 3%) 정도가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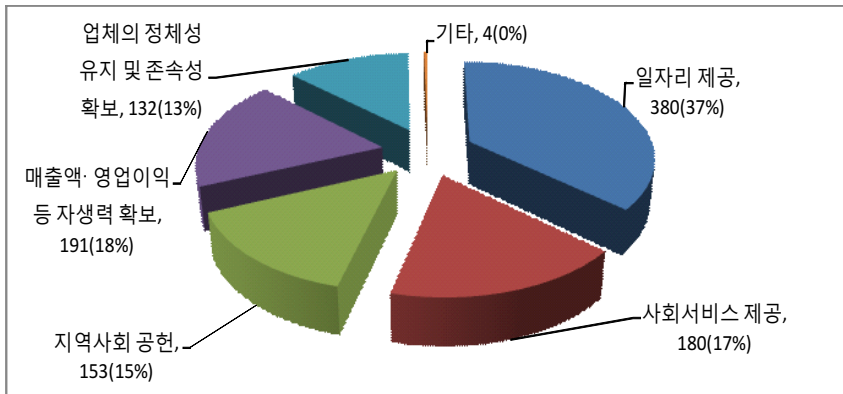
[그림 13] 4대보험료 지원 중단이 사회적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응답



(4)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의 순위

- 설문에 응답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36.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매출액·영업이익 제고를 통한 자생력 확보(18.4%), 사회서비스 제공(17.3%), 지역사회 공헌(14.7%), 업체의 정체성 유지 및 존속성 확보(12.7%) 순으로 나타남

[그림 14] 응답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추구하는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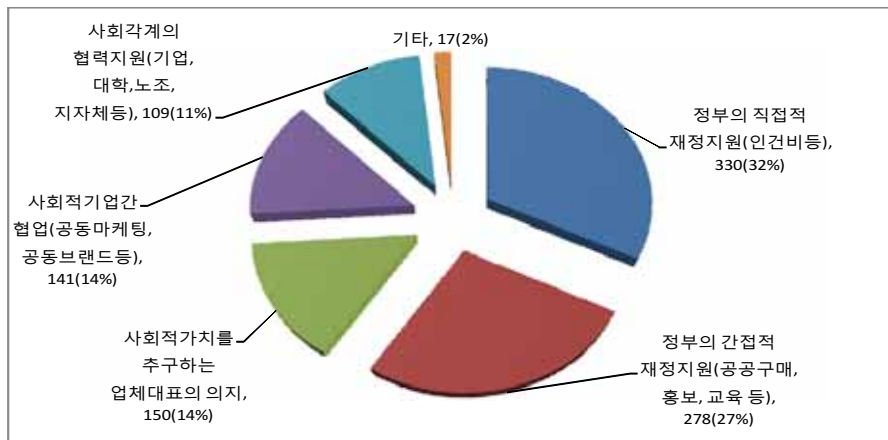


(5) 응답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설문에 응답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이 각각 32.2%와 27.1%로 가장 많은 응답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업체대표의 의지가 14%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방문업체 면담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공동마케팅이나 공동브랜드 등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기업·대학·노동조합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각계의 협력과 지원도 각각 13.8%와 10.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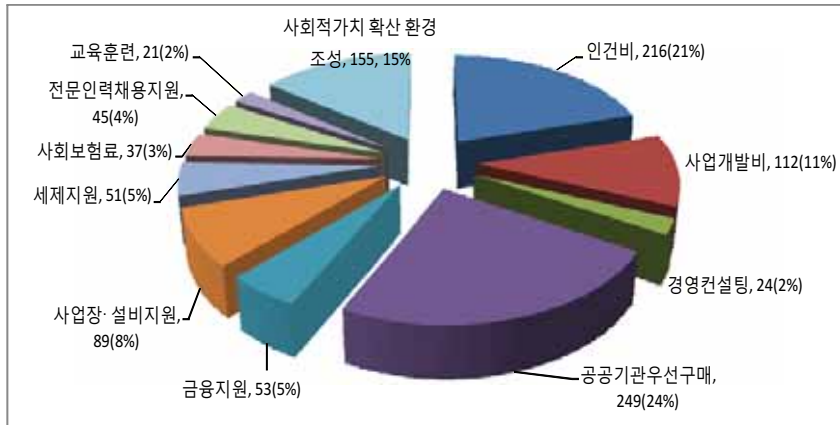
[그림 15] 응답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6) 사회적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정부지원정책

-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지속될 필요가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인건비 지원이 20.6%, 사회적가치의 공유·확산 및 환경조성이 14.7%로 나타남
- 그러나 교육·훈련(2.0%), 경영컨설팅 지원(2.3%), 사회보험료 지원(3.5%), 세제지원(4.8%), 금융지원(5.0%) 등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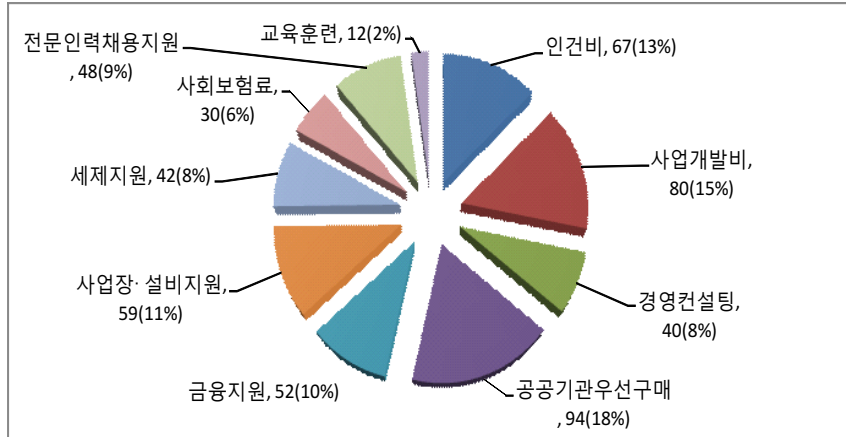
[그림 16] 사회적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정부지원정책



(7) 정부지원정책 중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정책

- 정부의 지원정책 중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사업개발비 지원(15.3%), 인건비 지원(12.8%), 사업장·장비 및 설비지원(11.3%) 순으로 조사됨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그림 16]에서와 같이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꼽고 있으나, 동시에 현재 가장 문제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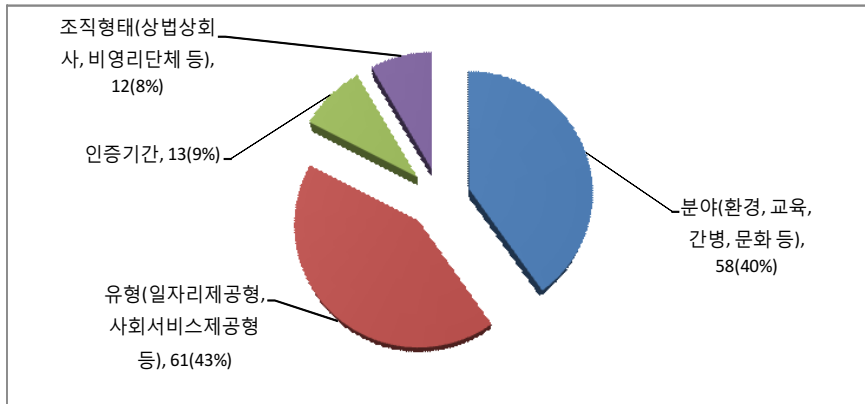
[그림 17] 정부지원정책 중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정책



(8) 정부 지원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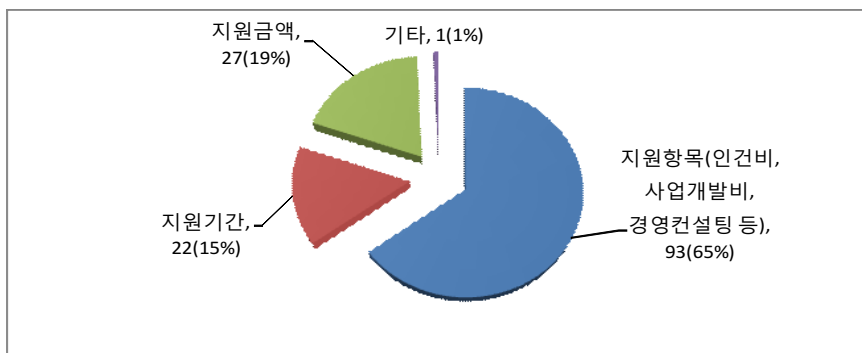
- 정부가 근로자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경영컨설팅 등의 정책 지원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업종이나 유형, 인증기간, 조직형태별로 지원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4.8%가 “그렇다”라고 답함
- 지원방법을 달리할 경우 업종·분야, 유형, 조직형태 및 인증기간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유형(43%)과 분야(40%)가 높게 나타남

[그림 18] 지원방법을 달리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



- 유형과 분야의 지원방법을 달리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원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항목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65.0%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각각 18.9%와 15.4%로 나타남

[그림 19] 유형과 분야 등 지원방법을 달리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지원내용



2. 면담조사 결과

가. 면담조사 개요

(1) 지역간담회 개최

- ☐ 지역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분야별 사회적기업가의 의견을 청취함
 - 주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제고 방안
 - 일시·장소: 2013년 12월 13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성남시)
 - 토론자로 참석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는 유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과 분야(환경, 교육, 문화, 간병가사, 제조업, 벤처 등)를 고려하여 선정함

[그림 20] 지역간담회 현장



(2) 박람회 참석 및 공동판매장 방문

- 『사회적기업박람회』·『소상공인 창업박람회』 및 『창조경제 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에 참석하거나 공동판매장 등을 방문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을 관람하고 업체 관계자 등과 면담을 실시함

[그림 21] 사회적기업박람회(킨텍스, '13. 7.1.~7.3.)



[그림 22] 대한민국 소상공인 창업박람회(킨텍스, '13.10.9.~10.12.)



[그림 23] 창조경제 박람회(코엑스, '13.12.12.~12.15.)



[그림 24] 사회적기업제품 공동판매장



store36.5 동작점



mini-store36.5 목동점

(3) 사회적기업 업체탐방

- 사회적기업 업체 대표들을 만나서 사회적기업 운영상 부딪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위기 극복 사례, 각종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작업현장을 둘러 봄

[그림 25] 사회적기업 업체 탐방



(주)심원테크



리드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나. 주요 면담내용¹⁰⁾

□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지원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지원금액의 인상 및 지원금의 연차별 축소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됨

“5년의 인건비지원 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동안 성장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될지 의문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을 지원받고 자립하기 어려움. 5년 후 일률적으로 지원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자립할 때까지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함”

“인건비 지원비율을 너무 큰 폭으로 축소함” “인건비 지원금의 차등지원 없이 5년간 지원이 필요함” “연착륙을 위하여 연도별 축소율을 완화해야 함”

- 획일적 지원의 문제점 및 인건비지원 비중 축소과정에서 보완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인건비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인건비 지원이 오히려 자생력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획일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업종별로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저희 업체는 2014년 6월에 인건비지원이 만료됨.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인원감축도 고려 중임. 취약계층에게 만이라도 인건비지원이 되어서 고령자, 여성가장 등 이런 분들이 설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함”

“인건비 직접지원은 기업의 자립성을 해치므로 지양해야 함. 오히려 사업개발비, 세제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현실적 상황에 적합하게 인건비의 지원조건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됨

10) 상세한 면담내용은 [부록 2] 참조

“근무형태 및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지원이 필요함”
 “지원조건인 취약계층 비율을 맞추느라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취약계층을 50%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회사 사업특성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사회적 목적 유형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면 좋을 것임.”
 “인건비 지원은 취약계층의 고용률 또는 유지율 등 실적에 따른 지원이 되어야 함.”

□ 사업개발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금의 사용항목이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R&D 등 사업 개발에 필요한 지출항목에 사용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홍보나 마케팅 위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됨

“사업개발비는 용처를 정하지 말고 적절한 평가지표를 통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되었으면 함. 용처를 정해 주는데 실제 현장과 매칭이 잘 되지 않음”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자산취득성 경비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시설기반이 열악한 사업장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시설·장비 구입비가 현실적임”
 “사업개발비와 R&D는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포장디자인 등의 사업개발비가 필요하며 디자인과 함께 포장재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함”

- 사업개발비 지원금이 나눠주기방식으로 지원되고 있고, 업종별·유형별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

“나눠주기식, 단기적 효과에 치중한 단발성 사업임.”
 “사업개발에 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지출이나 1/n로 나누는 방식의 자금지원이 되고 있음”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사업비를 신청하나 지원기관에서는 지원해야 할 사업체가 많아 여러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만큼 보조 받지 못함”

- 사업개발비 지원금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실질적인 사업개발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과 지원조건 및 방법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의 요구에 보다 적합하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사회적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업체별 지원금액이 적어져 사업개발비로서의 의미가 없어짐” “소액다수의 지원방식을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업체 실적평가를 기반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지원업체 선정심사가 연 1~2회에 불과하여 사업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자금지원이 되지 못함”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금액이 부족함”

- 사업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집행되고 있으나, 심사의 전문성 부족과 방법상의 문제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신청업체에게 충분한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됨

“지원금 신청 심사시 심사관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
 “지원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의 전문성 등을 보완할 필요 있음. 다양한 심사방법과 심사위원들이 있어야 함”
 “사업개발비 신청사업에 대한 기업별 프리젠테이션 등이 없거나 1,2분으로 매우 짧음. 최소 5분 10분정도의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으로 사업개발비 신청기관의 입장을 제대로 들어보아야 함”

□ 경영컨설팅 지원

- 컨설팅 업체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사회적기업의 실상에 맞는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우리 업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은 실효성이 없었음.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기에 급급한 컨설팅이었다고 생각함.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되도록 사전 점검과 감독이 필요함”
 “업체 특성에 맞지 않는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컨설팅이 많았음”

“컨설팅업체의 전문성이 부족함. 컨설팅업체 선정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업체에 필요한 컨설팅 요구에 맞는 컨설팅 업체를 맞춤형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함”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구매실적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없음” “일선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부족함”

“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는 우선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인식이 낮다보니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음”

“실제로 도움을 느끼지 못함. 가장 내실 없는 제도인 것 같음”

-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입찰조건 등을 완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강화, 구매실적 관리 및 의무구매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적극적인 홍보와 의무구매제도가 필요함”

“공공기관 입찰 참여 기준이 과도함” “조달물품 품목에 대해서 우선구매가 되도록 하여야 함”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구매를 정부 예산의 일정부분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하고, 입찰시 입찰 점수 부여를 의무화해야 함.”

“공공구매제도에 영세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질 강화가 필요함”

☐ 판로개척 지원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판로개척이 매우 중요한 지원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판로개척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현재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판로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법령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자금대출

- 이자율, 대출조건 등이 크게 유리하지 않고, 요건과 절차 등이 까다로워서 실제 활용도가 낮으며,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대출상품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사회적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대출이 용이하지 않음” “첨부 서류 등 대출 방법과 대출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함” “자금대출 신청시 일반기업 대출 기준과 별 차이가 없으며 이율도 정책자금 치고는 높은 편임”
 “사회적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 완화가 필요함”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함”
 “사회적기업에 맞는 대출정책이 필요함”

☐ 사업장, 시설비 및 장비 지원

- 사업장 및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으며, 사업개발비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시설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시설장비 지원이 절실함.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시설장비가 부족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어려움”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건비보다는 시설·장비의 지원이 꼭 필요함” “시설·장비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고정비 감축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지원이 거의 없음”
 “사회적기업은 이익금으로 시설비 투자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함”

□ 세제지원

-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지원이 사회적 기업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은 아니며, 법인세 등의 전액감면과 감면기간 연장,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됨

“영세 사회적기업은 세제 지원의 혜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음”
 “법인세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 50%감면이 있으나 인건비 종료 후 경영난이 심하므로 100% 면제 혜택이 필요함”
 “부가세 면세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청소용역비(인건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건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전환 요청함”

□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료는 인건비 지원 중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고용유지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기간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지원기간을 좀 더 연장해주었으면 함(약 10년 정도)”
 “사회적기업은 자생력 확보가 어렵고 취약계층의 생산성이 높지 않으므로 인건비 지원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함” “4대보험 지원은 계속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사회적기업 사업자 부담금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전문직 채용지원

- 지원의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역량이 부족하므로 전문인력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정부지원의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봄” “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끊기더라도 성장기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지원은 절실함”
 “낮은 금액에 올 전문인력이 많지 않음”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임금지원이 필요함” “전문인력 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문인력 지원은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면 함” “지원기간을 10년 정도로 연장해 주었으면 함”

- 지원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과 매출실적 또는 업체 특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지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문제가 발생함. 전문인력의 자격조건을 조금 완화하고 전문인력 지원금의 대폭 상향이 필요함.” “너무 요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활용 못함” “청소관련 전문가인력은 경력증명서 확인이 어려워 현실과 맞지 않음”
 “매출실적 등 평가에 따라 전문인력 지원 수를 늘려주는 방안을 제안함”

□ 교육훈련

- 다양한 사회적기업 실정에 적합한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전문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업종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재직자훈련과정을 보면 유형별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업무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함” “전문적인 기술교육이 필요함” “업종별 직업능력개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획일적인 방법과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실정에 맞는 교육 방법 및 내용이 필요함” “참여자들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지도, 재정자립도 및 전문성 등이 낮다는 지적과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형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인지도가 낮고, 재정자립도와 전문성이 취약함”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 간 파트너십이 없고,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중간지원조직 간에도 상호 교류나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음”
“중간지원조직은 다양성 보다는 역량강화가 더 중요함”

□ 기타 의견

- 사회적기업 창업단계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으므로 베이비부머 등 사회적기업가로 활동할 의지와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사회적기업의 창업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없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이후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경우 고용과 매출실적 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사회적기업 창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의지와 사업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을 창업단계에서부터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사회적기업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를 보면, 297건 31억 원에 이름”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연 2회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외에는 별다른

사후관리 대책이 없음” “인증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원금 사용
점검 등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여 지원에 활용할 필요
가 있음”

- 현행 인증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하고, 사회적기업기금을 설치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행 인증방식을 등록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와
지원제도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사회적기업 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개선, 거점형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부처간 정
책혼선의 문제점 및 지원 업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됨

“5년 동안의 양적 확대에 비하여 질적 성장은 미흡함. 질적인 측면의 강화가
필요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거점형 비즈니스와 지역 및 공간중심
의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부처간 정책방향이 달라서 문제가 됨. 예를 들어 간병·가사 지원의 경우 보건
복지부는 간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려고 하고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등 취
업취약계층을 활용하려고 하는 등 부처간 정책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업종에 따라 사회적기업 설립취지와 달리 다양한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경우
가 있음. 엄격한 평가와 기준 확립이 필요함”

V.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1. 지원제도 전반의 문제점

가. 과도한 일자리창출 중심의 사회적기업제도 운영

-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전체 1,012개 인증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제공형은 6%(60개), 지역사회공헌형은 1%(11개)에 불과함
- 이에 반해 일자리제공형은 65%(616개)에 이르고 혼합형(144개, 15%)과 기타형(122개, 13%)도 대부분 일자리제공을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이 발달한 유럽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사회적기업의 주된 활동이며, 특히 이탈리아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형(B타입)은 33% 수준인 반면 사회서비스제공형(A타입)은 60%에 달함¹¹⁾
- 이러한 일자리사업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으로 인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적 사회적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음
 - 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이 많은 이탈리아의 경우 노인, 가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 정신병자, 출소자, 집행유예중인 자, 노숙자 등 서비스 대

11) 한국노동연구원, 「이탈리아 사회적기업」, 국제노동브리프(2006), pp. 31~35.

상과 내용이 다양하고 광범위함

- 일자리사업 편향의 제도운영은 지원업체 선정에 있어서 일자리 제공형에 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형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낳기도 함
- 사회적기업을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지원종료 후 인력감축과 일반근로자로의 교체로 이어지는 등 단기적 성과에 그칠 우려가 큼
- 이는 한편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제고에도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나. 양적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질적 성장에 소홀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자립성 및 지속가능성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양적 성장을 따라르지 못하고 있음
- 평균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2007년 49.8명에서 2009년 38.6명, 2011년 25.3명, 2013년 22.3명으로 사회적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음
- 또한 대표적인 경영지표인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2007년에는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한 사회적기업이 전체 업체 중 73%였으나, 2009년 24.6%, 2010년 16.2%, 2011년 14.1% 등 매년 크게 하락하는 등 2011년 기준으로 약 86%의 사회적기업이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보고 있음

[표 6] 사회적기업의 평균근로자 수 및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 수

(단위 : 개, %)

	2007	2008	2009	2010	2011
사회적기업의 평균근로자 수	49.8	39.0	38.6	27.4	25.3
사회적기업 중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 수(비중)	27 (73.0)	자료 부정확	71 (24.6)	79 (16.2)	89 (14.1)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2.11.30, pp 29-31 재정리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년 ~ 2017년)』을 통해서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을 3,0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 그러나 일자리창출사업 위주의 양적 확대는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확대될 사회적기업도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일 가능성이 크고, 더욱 정부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음

다.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 ☐ 사회적기업은 매우 다양한 업종과 분야가 존재하고,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별 지원 업체 선정심사나 지원금의 지원방식, 사후관리, 평가 등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형태를 감안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그러나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경영컨설팅 등 정부의 각 지원사업에 있어서 업종이나 분야 및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

고 단순·확일적으로 이루어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에 미달하는 업체는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업종과 분야에 따라 취약계층 인력이 풍부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등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선정심사 기준에 있어서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수익창출 가능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업종에 따라 수익창출 능력과 지속가능성이 다를 수 있고, 서비스제공형 기업은 일자리제공형 기업에 비하여 대체로 수익을 내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기업의 영업환경이 업종에 따라 다르고, 기업의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나 지원기간 등 지원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일적 지원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사회적기업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임

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체계 미흡

-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매년 2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인증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지원금 사용을 점검하는 등의 사후관리는 미흡한 실정임
-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로 297건(31억 2천만원)¹²⁾이 적발되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

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됨

-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근거는 있으나 하위 법령이나 조례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의 성과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 등 입법이 미비한 상태임
- 이로 인하여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실 있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증·재인증 심사나 제도개선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2. 개별 지원제도의 문제점

가.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의 종료로 재정절벽 효과 초래

-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정부지원이 종료된 후에 자생력 저하와 과도한 인력감축 등을 초래하는 재정절벽 효과가 나타남
- [표 7]에서 2007년 이후 기업별 평균 고용인원 수를 보면, 2007년 49.8명이던 근로자 수가 2013년에는 22.3명까지 낮아지고 있음. 이는 기업당 자체 고용인원은 2009년 이후 평균 16명~17명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으나,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고용인원이 인건비지원 종료로 2008년 22.6명에서 2012년 6.8명으로 낮아지는 등 일자리사업을 통한 고용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임

-
- 12) 자료; 고용노동부(부정수급의 유형 중 총 부정수급 건수의 90%에 해당하는 276건이 허위작성(목적외 사용 8건, 제한자 지원 1건, 중복지원 등 기타 21건)인 것으로 나타나 확인·검증 등 철저한 사전·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7] 사회적기업의 기업별 평균 고용인원 수

(단위 : 명)

기업별 평균 고용인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49.8	39.0	38.6	27.4	25.3	24.4	22.3
일자리사업을 통한 고용	-	22.6	23.6	11.4	8.6	6.8	-
자체고용	-	13.7	16.5	16.0	16.8	17.5	-

자료 : 2007~2011년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2012.11.30, p. 29 재정리, 2012 및 2013년도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설문조사 결과([그림 11])에서도 조사대상 업체의 42.7%가 현재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그림 12])에 58.6%에 해당하는 기업이 폐업, 일반기업으로 전환, 인력감축을 할 것이며, 19.5%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교체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음

나. 사업개발비의 지나친 용도제한 및 나눠주기식 배분

- 사업개발비의 지출항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업종과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개발비 항목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A유형(창업초기단계)에 대해서는 홍보·박람회 참가정보화 구축인 증비용 및 론칭행사비로 제한되어 있고, B유형(사업정착단계)과 C유형(사업성장단계)에 대해서는 제조업,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IT분야 등 세부 업종별로 지출항목이 지정되어 있음
 - 예컨대, B유형의 경우 제조업에 대해서는 ①자본재 리스비용, ②시장 개척비, ③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④B2B(솔루션 제작의뢰)로 제한되어 있고, 음식업은 ①메뉴개발(주메뉴개발 및 시연회), ②요식업관

리매뉴얼, ③서비스 매뉴얼 구축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소매업에 대해서는 ①쇼핑몰 론칭비와 ②CI·BI 개발을 통한 패키지(쇼핑백, 포장지 등)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

- 사회적기업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나눠주기식 배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업체별로 지원금이 적어 필요한 사업개발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사업개발비는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12년의 경우 사업개발비 예산액 175억원이 1,246개 업체에 지원되어 업체당 평균 1,4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치고 있음
- 지원업체 선정에 있어서 심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신청한 기업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임
- 심사과정에서 해당 업체에게 부여하는 프리젠테이션 시간이 1~2분 정도로 짧아 자사의 사업개발에 대한 설명기회를 실질적으로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다.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의 경영컨설팅

- 컨설팅 내용이 주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유형별·분야별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컨설팅이 되지 않고, 경영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 정부의 지원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설문 조사 결과([그림 11])를 보면, 경영컨설팅에 대한 응답은 2.5% 수준에 불과하여 인건비(42.7%), 사업개발비(22.1%), 전문인력채용(13.7%) 지원

등과 비교할 때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정책으로 나타남

- 또한 향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그림 16])에서도 11개의 정부정책 중 교육훈련(2.0%) 다음으로 낮은 2.3%로 조사됨
- 경영컨설팅이 전문적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이유는 컨설팅 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업종별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라. 공공기관의 인식부족과 제도미비로 공공구매실적 저조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업체들의 수요는 가장 높은 데 반하여 사회적기업가들의 만족도는 가장 낮음
-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그림 16])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23.7%로 가장 높게 나옴
 -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그림 11])에는 인건비(42.7%), 사업개발비(22.1%), 전문인력 채용 지원(13.7%)보다 크게 낮은 6.7%로 나타났으며
 - 가장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그림 17])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17.9%)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는 공공기관의 장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구매촉진 장치(구매목표비율제, 입찰조건이나 구매

계약 요건 완화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매실적도 저조함

[표 8] 2012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총구매액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여성기업제품 구매액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
2012년 실적	106조 3,598억원	71조 9,860억원	3조 4,075억원	1,916억원
비중	100.0%	67.7%	3.2%	0.18%
법정구매 목표비율		50% 이상	물품·용역: 5% 이상 공사: 3% 이상	없음

자료 : 2013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15호) 및 공공기관
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115호) 재정리

- 504개 공공기관의 2012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1,916억
원으로 총 구매액의 0.18%에 불과함. 이 중 91개 기관은 구매실적이 전
혀 없으며, 66개 기관은 구매액이 500만원 이하임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
노동부장관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여기서 공공기관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¹³⁾ 및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¹⁴⁾에 따라 모든 국

13)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
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14)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
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기관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경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통보나 고용노동부의 공고 대상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이들 기관들의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구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마. 판로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및 지원대책 미흡

-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판로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정부의 지원도 다른 지원책에 비하여 취약한 실정임
- 사회적기업 운영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그림 10])에서 인건비 등 운영자금 부족(29.6%) 다음으로 판로애로(18.4%)를 꼽을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은 민법상 법인(22%), 비영리단체(11%), 사회복지법인(10%) 등 상당수의 업체가 비영리 조직으로서 영업활동 역량이 일반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판로지원이 더욱 필요한 지원책임
- 또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자체 사업으로 온라인 상품소개물이나 공동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바.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대출제도 미비 및 활용실적 저조

- ☐ 자금대출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시설·장비 등의 투자를 통하여 자생력

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임에도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사회적 기업에 특화된 대출상품 미비로 활용 실적이 저조함

- 2012년도 자금대출 실적을 보면,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29건(26억원),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을 통해서는 3건(8억원) 등 총 32건(34억원)이 지원되는데 그쳤고
- 2013년도에는 10월 말까지 미소금융재단을 통해서 8건(8억원),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을 통해서 10건(25억원) 등 총 18건(32억원)에 불과함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근로자로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자기업이 70%가 넘는 등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수익창출 능력과 대출금 상환 여건이 매우 취약함
 - 따라서 영리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건의 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사.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대부에 관한 실질적 지원대책 미비

- ☐ 사회적기업은 사업장과 시설·장비가 미비하거나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이 큼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1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대부받거

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장 또는 시설·장비로 활용하는 사례는 거의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 ☐ 법 제11조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이나 「국유재산법」(제30조, 제34조 등), 「물품관리법」(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31조, 제78조 등) 등 관련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

아. 실효성 낮은 교육훈련 지원

- ☐ 교육훈련 지원은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정부의 지원 중 도움이 되고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그림 11))에서 교육훈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함(0.0%)
- ☐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이고 업종 및 유형별로 다양한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이 부족함

3.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

- ☐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조직 등 인프라의 한계를 감안할 때, 중간지원조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인지도가 낮고, 정부의 위탁사업에 의존함으로

써 재정자립도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도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 간 파트너십이 부재하고 오히려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중간지원조직 간에도 네트워크 구축이나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의 사업방향이나 내용이 사회적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으로 피드백을 하지 못하고 있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연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VI. 지원제도 개선방안

1. 지원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가. 균형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

-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지나치게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정부의존형 사회적기업을 양산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사회적 가치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가치가 균형적으로 추구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각 6%와 1%에 불과한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 중시

- ☐ 최근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규모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이 매우 취약하여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 ☐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양적 확대보다는 자생력 제고와 지속성 확보 등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 한정된 예산으로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업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다. 유형과 분야 등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

- ☐ 획일적인 정부지원정책을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분야별로 지원 방법과 지원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의 지원요건과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지원방법 등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분야를 고려해야 함
 - 각 사업별로 지원업체 선정방법, 지원금의 지원방식, 사후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분야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라.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평가 체계 확립

- ☐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사후관리 대책과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명확한 법적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인증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점검하는 등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법령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지원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성과평가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류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개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가. 유형에 따른 인건비 지원조건 차등화

-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 지원은 유형별로 지원조건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자생력 확보와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중요하므로 인건비 지원은 고용유지와 연계시키고,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공공구매 및 판로개척, 자금대출 등 자생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개발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사업방식 개선

- ☐ 사업개발비의 지출용도가 홍보나 마케팅 위주로 제한되어 있고 다수 업체에 소액으로 배분됨으로써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나눠주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R&D투자 등 용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과

중복되거나 업무영역이 불명확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홍보·마케팅 등에 지출되는 사업개발비의 지출항목은 경영컨설팅 사업과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되도록 하고, 사업개발비는 연구개발이나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래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 지원정책 간 사업내용 조정이 필요함
- 또한 사업개발비 지원업체 선정에 있어서 심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신청업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 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협력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 풀을 확보하거나 사업비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다. 경영컨설팅의 전문성 제고

- 경영컨설팅은 2012년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40억원의 예산으로 기초컨설팅 401개소, 회계프로그램 163개소, 전문컨설팅 123개소 등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하였음에도, 컨설팅 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유형별·분야별로 적합하지 않은 컨설팅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낮은 지원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 전문성을 갖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업종별로 심도 있는 맞춤형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라. 우선구매 목표비율의 설정 등 공공구매 확대방안 마련

- ☐ 공공기관 우선구매정책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요구는 높은 데 반하여 구매실적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1)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비율의 법정화 필요

- ☐ 사회적기업제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제품이나 여성기업제품과 같이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은 각각 50%와 5%(공사 3%)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12년 67.7%)을 거두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기업제품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구매목표비율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 조달입찰 가점제도 개선 필요

- ☐ 공공기관의 조달 입찰시 사회적기업에게 부여하는 가점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조달입찰자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사회적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일반용역(정부의 경우는 가점 부여)·기술용역·시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있음)

-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입찰자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공사 등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가점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임
- 또한 2013년 2월, 조달청은 단가계약의 일종인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2단계경쟁 절차 시 업체선정 방법으로 ‘최저가’방식, ‘종합평가(평가항목과 배점 가변방식)’방식 외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가점부여가 고정된 ‘표준평가’방식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개선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평가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수요기관에게 부여하고 있어서 중증 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약자 지원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평가방식에도 약자지원 항목에 대한 고정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헌법기관 소속 국가기관의 공공구매 실적관리 대상 포함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헌법기관 소속의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들은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통보나 공고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상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도 통보나 공고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마. 판로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명시 및 공공·민간의 유희시설 활용

- ☐ 판로애로는 사회적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판로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판로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사회적기업진흥원이 25개의 오프라인매장(복합매장 7개, 숭인숍 18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약 10개의 판매장 또는 숭인숍을 개설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보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임
- 따라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유희시설 등을 활용하여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¹⁵⁾
- 또한 민간업체의 유희시설(예; 금융기관의 지점 통폐합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에 지원(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대출제도 마련 필요

- ☐ 현행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영세성과 재무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동일시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임. 따라서 사회적 목적과 영리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정책자금을 조성하거나 사회적금융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5) <사.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대부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 마련> 참조

-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한 대출과 분리시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공공출연 또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기업기금”을 설치하거나,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¹⁶⁾ 방식의 “사회혁신채권(SIB; Social Impact Bond)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사.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대부 등에 관한 실질적 지원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지원근거가 없으므로 입법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 제11조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이나 「국유재산법」(제30조(사용허가), 제34조(사용료의 면제), 제46조(대부기간) 등)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31조(대부기간) 등) 등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희시설이나 공간 등 국·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여 사회적기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동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16) 투자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수익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착한 투자방식을 말함

- 예: 일반입찰을 통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예외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임
- 2014.1.7. 공포('14.7.8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불용품의 무상양여 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불용품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에 양여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법」 제38조(불용품의 양여)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 교육훈련프로그램 개선 및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강화

-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의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어서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업종 또는 유형에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교육훈련사업과 연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 중간지원조직이 행정기관, 기업, 개인, 시민사회 등 각종 외부적 자원을 사회적기업과 연계시키고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취약한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킬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서 차지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비춰볼 때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근거가 미흡한 수준임
 - 따라서 역량을 갖춘 기관이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요건 강화,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별
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있어서 지원체계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와 함께 효
율을 위한 통합 또는 연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과 같이 광역단위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만으로는 중간지원조
직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기초단위에도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둘 필요가 있음

VII. 결 론

- 이 현장보고서는 사회적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지역간담회 개최, 박람회 참석, 업체 탐방 등을 통하여 얻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것임
- 우선, 정부지원제도의 기본방향이 지닌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가 과도하게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제공 등 균형적인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일자리창출 중심의 제도운영과 연계되어 지나치게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질적 성장을 중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획일적 지원정책의 비효율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지원조건 등에서 유형과 업종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넷째, 정부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가 미흡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주요 지원제도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업개발비 사용용도의 경직성 및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비가 사업개발을 위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지원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경영컨설팅이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업체를 선정하고 업종별 맞춤형 컨설

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인식부족과 제도미흡으로 구매실적이 저조하므로 법정구매 목표비율을 설정하는 등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판로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지원책이 부족하므로 입법적 개선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유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판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대출지원 정책이 미흡해서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대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래에서는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왜 중요하고 정부의 올바른 정책적 지원이 왜 필요한 지를 덧붙이고자 함

□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49.3%)이며, 정규직의 60%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이 32.6%¹⁷⁾에 이르고 있음. 또한 장애인의 비장애인에 대한 상대빈곤율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고,¹⁸⁾ 2013년도에는 261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137개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만큼 장애인에 대한 고용여건도 좋지 않음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노인빈곤층은 증가하고 비정규직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소득양극화가

17) 2013. 8 기준 통계청 자료(노동계에서는 45.9%로 파악함)

18) 김용탁 외, 「주요국가의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 정책연구(2013-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pp. 136-137.

심화되고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55세~79세 고령층 인구(1,092만명)의 53.1%가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연금수령자(512만명)의 월 평균 수령액도 39만원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63.7%는 월 평균 수령액이 25만원에도 못 미칠 만큼¹⁹⁾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실정임

- 반면 우리나라의 기부수준은 세계 100여개 국가 중 45위에 그치고 있으며,²⁰⁾ 자원봉사 활동시간은 OECD국가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²¹⁾ 또한 기부·자원봉사 및 이웃돕기 참여율을 통합한 ‘나눔지수’²²⁾는 세계 153개국 중 57위에 머무는 등 아직 나눔의 문화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와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를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기부와 자원봉사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저조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국가·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저소득층, 노인빈곤층,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이탈 주민,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와 갱생보호자, 알콜 중독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에게 나눔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유럽 등 해외에서도 자본주의의 시장실패와 무한경쟁에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19) 2013. 5 기준 통계청 자료

20) 영국의 자선재단인 CAF(Charities Aid Foundation)에서 발표(2013.11)한 2012년 세계기부지수

21) 한국노인개발연구원, 『노후설계서비스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은 2시간 16분으로 분석함(OECD 평균은 3시간 27분)(2013.11.6.).

22) 갤럽 인터내셔널이 2010년 측정(국정브리핑, 2012.11.30.)

-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향은 사회적기업을 일자리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정부가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취약계층 근로자의 낮은 근로능력과 열악한 영업환경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아울러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높여주는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혜원,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원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18집 제1호, 2011.
- 김순양, 「사회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정부지원을 위한 기준 설정 및 행정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17집 제2호, 2010.
- 김학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 탐색」,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2012 봄).
- 김용탁 외, 「주요국가의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12.
-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개발결과」, 보도자료(2012.12.27).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2.11.
- 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2013.12.
- 한국노동연구원, 「이탈리아 사회적기업」, 『국제노동브리프』, 2006.
-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평가」, 2012.10.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이 고용창출 및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2.7.
- 한국노인개발연구원, 「노후설계서비스 활성화 방안」, 2013.11.

부록 1. 설문조사 방법 및 응답업체 현황

☐ 조사설계 및 자료처리 방법

구분		내용
조사설계	조사대상	913개 인증사회적기업 전수조사
	조사방법	이메일(2회) 및 팩스를 통한 설문지 발송 및 회수
	회수한 설문지	178개
	조사기간	이메일 : 2013.11.1.~11.10, 11.11.~11.22. 팩 스 : 2013.11.12~11.22.
자료처리	Editing	기록상의 오류, 누락 및 중복 검증
	Coding	전산처리를 위해 설문지를 부호화(Coding)
	Data Cleaning	입력된 자료의 오류를 사전 검증하고, 발견된 오류는 원 설문지와 비교하여 교정(Editing)
	Data Processing	-Excel을 이용하여 응답자료를 처리함 -각 항목별 응답비율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설문에 순위가 있는 응답에 대해서는 3순위(1점)를 기준으로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집계함

☐ 응답업체 현황

<응답 업체의 인증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결측	합계
기업수(개)	6	21	11	31	42	27	39	1	178
비중(%)	3.4	11.8	6.2	17.4	23.6	15.2	21.9	0.6	100.0

<응답 업체의 지역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기업수(개)	35	4	9	7	11	8	4	38	5
비중(%)	19.9	2.3	5.1	4.0	6.3	4.5	2.3	21.6	2.8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세종	합
기업수(개)	8	12	6	11	5	11	2	0	176
비중(%)	4.5	6.8	3.4	6.3	2.8	6.3	1.1	0.0	100

<응답 업체의 유형>

	일자리제 공형	사회서비 스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결 측	합계
기업수(개)	127	9	1	28	12	1	178
비중(%)	71.3	5.1	0.6	15.7	6.7	0.6	100.0

<응답 업체의 업종 또는 분야>

	환경/ 재활 용	문화/ 관광/ 체육	급식/ 간식	간 병 가 사	교육	보 육	보 건 의 료	산 림 보 전	제 조 가 공/ 판 매	청 소/ 위 생/ 경 비	운 송/ 택 배	주 거 복 지	합 계
기업수 (개)	29	26	12	16	27	5	3	0	57	22	2	5	204
비중 (%)	14.2	12.7	5.9	7.8	13.2	2.5	1.5	0.0	27.9	10.8	1.0	2.5	100.0

<응답 업체의 기업규모(근로자 수 기준)>

기업규모	5인 이하	6인~ 10인	11인 ~20인	21인 ~30인	31인 ~50인	51인 ~100인	101인 ~299인	300인 이상	합계
기업수(개)	17	52	46	29	20	11	2	1	178
비중(%)	9.6	29.2	25.8	16.3	11.2	6.2	1.1	0.6	100.0

<응답 업체의 성장단계>

	창업단계	초기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쇠퇴 또는 재도약단계	합계
기업수(개)	2	18	121	21	16	178
비중(%)	1.1	10.1	68.0	11.8	9.0	100.0

부록 2. 설문조사 질문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영업환경 하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정책 등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조사처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기업가분들의 인식과 평가를 조사하여,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개인이나 각 기업의 개별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오직 통계적 분석으로 처리되어 활용됨을 말씀드립니다.

기업현장에서 몸소 겪고 계시는 귀중한 경험과 의견이시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정부정책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11.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 김 준
(문의 : 02-788-4734, sonec@assembly.go.kr, 손을춘 서기관)

[업체현황 관련]

1. 귀 업체의 설립연도·지역 및 사회적기업 선정연도는 언제입니까?

설립연도	()년	설립지역 (광역단위)	()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연도	()년	인증사회적기업 선정연도	()년

2. 귀 업체의 사회적목적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일자리 제공형() ②사회서비스 제공형() ③지역사회 공헌형()
④혼합형() ⑤기타형()

3. 귀 업체의 업종 또는 사업분야는 무엇입니까?(중복 체크(√) 가능)

- ①환경·재활용() ②문화·예술·관광·운동() ③급식·간식·반찬·도시락()
④간병가사요양() ⑤교육() ⑥보육·돌봄() ⑦보건·의료·재활치료
()
⑧산림보전() ⑨물품·식품 제조·가공·판매() ⑩청소·위생·경비()
⑪운송·택배() ⑫주거복지·건축조경() ⑬기타(내용기입:)

4. 귀 업체의 유급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 ①1인~5인() ②6인~10인() ③11인~20인() ④21인~30인()
⑤31인~50인() ⑥51인~100인() ⑦100인~299인() ⑧300인 이상
()

5. 귀 업체의 취약계층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 ①1인~5인() ②6인~10인() ③11인~20인() ④21인~30인()
⑤31인~50인() ⑥51인~100인() ⑦100인~299인() ⑧300인 이상()

6. 귀 업체의 성장단계는 아래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창업단계:() ②창업초기단계() ③성장단계() ④성숙단계()
⑤쇠퇴 또는 재도약단계()

[업체운영 및 정부지원 관련]

1. 귀 업체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인건비 및 운영자금 부족 ②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③마케팅 및 홍보 부족
④판로애로 ⑤사업장, 장비 및 설비 미비 ⑥전문기술 또는 정보 부족
⑦전문경영능력 부족 ⑧회계·노무관리 애로 ⑨기타(내용기입:)

2. 현재 귀 업체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①인건비 ②사업개발비 ③경영컨설팅 ④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⑤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⑥사업장·시설·장비 등 ⑦세제지원 ⑧사회보험료
⑨전문인력 채용지원 ⑩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⑪기타(내용기입:)

3. 과거 귀 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았던 지원 중 현재 종료된 지원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은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①인건비 ②사업개발비 ③경영컨설팅 ④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⑤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⑥사업장·시설·장비 등 ⑦세제지원 ⑧사회보험료
⑨전문인력 채용지원 ⑩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⑪기타(내용기입:)

4. 정부지원 중 귀 업체에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인건비 ②사업개발비 ③경영컨설팅 ④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⑤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⑥사업장·시설·장비 등 ⑦세제지원 ⑧사회보험료
 ⑨전문인력 채용지원 ⑩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⑪크게 도움이 된 지원이
 없음
 ⑫기타(내용기입:)

5. [현재 인건비·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업체만 해당]

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귀 업체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인력 감축 ②취약계층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교체 ③특별한 조치를 취
 하지 않음 ④일반기업으로 전환 고려 ⑤폐업 고려 ⑥기타(내용기입:)

나.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면 귀 업체에 미
 치게 될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인력 감축 ②취약계층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교체 ③특별한 조치를 취하
 지 않음 ④일반기업으로 전환 고려 ⑤폐업 고려 ⑥기타(내용기입:)

6. [인건비·4대 사회보험료 지원이 중단 또는 종료된 업체만 해당]

가. 정부로부터 받았던 인건비 지원의 중단으로 인하여 귀 업체가 조치를 취했거나 향후 취할 예정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인력 감축 ②취약계층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교체 ③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④일반기업으로 전환 고려 ⑤폐업 고려 ⑥기타(내용기입 :)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나. 정부로부터 받았던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의 중단으로 인하여 귀 업체가 조치를 취했거나 향후 취할 예정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인력 감축 ②취약계층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교체 ③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④일반기업으로 전환 고려 ⑤폐업 고려 ⑥기타(내용기입 :)

7. 향후 귀 업체에게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인건비 ②사업개발비 ③경영컨설팅 ④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⑤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⑥사업장시설바·장비 등 ⑦세제지원 ⑧사회보험료
⑨전문인력 채용지원 ⑩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⑪기타(내용기입 :)

8. 정부지원 중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해당 항목은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①인건비 ②사업개발비 ③경영컨설팅 ④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⑤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⑥사업장·시설·바·장비 등 ⑦세제지원 ⑧사회보험료
⑨전문인력 채용지원 ⑩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⑪기타(내용기입 :)

8-1. 위 8번에서 체크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십시오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인건비	
②사업개발비	
③경영컨설팅	
④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⑤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⑥사업장·시설·바장비 등	
⑦세제지원	
⑧사회보험료	
⑨전문인력 채용지원	
⑩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⑪기타(내용기입:)	

9. 귀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일자리 제공 ②사회서비스 제공 ③지역사회 공헌
 ④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제적 자생력 확보 ⑤업체의 정체성 유지 및 존속성 확보 ⑥기타(내용기입:)

10. 귀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인건비등) ②정부의 간접적 지원(교육, 홍보, 공공구 매, 금융지원 등) ③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업체대표의 의지 ④사회적기업 간 협업(공동 마케팅·공동브랜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⑤기업, 대학, 노동조합, 지자체 등 사회각계의 협력과 지원 ⑥기타(내용기입:)

11.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는 정부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인건비 ②사업개발비 ③경영컨설팅 ④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⑤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⑥사업장·시설비·장비 등 ⑦세제지원 ⑧사회보험료 ⑨전문인력 채용지원 ⑩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⑪사회적가치 공유·확산 환경 조성 ⑫기타(내용기입:)

12. 정부가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자금대출 등을 지원할 때, 획일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업종(분야)별, 사회목적유형별, 인증기간별, 조직형태별로 지원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예 ②아니오(13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예로 답한 경우]

12-1. 지원방법을 달리할 경우, 업종·분야, 유형, 조직형태 및 인증기간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업종·분야(교육, 환경, 간병 등) ②유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등) ③인증기간 ④조직형태(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12-2. 12-1에서 지원방법을 달리할 경우, 아래의 지원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지원항목(인건비,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등) ②지원기간 ③지원금액
④기타(내용기입:)

12-3.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에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는 정부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인건비 ②사업개발비 ③경영컨설팅 ④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⑤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⑥사업장·시설·장비 등 ⑦세제지원 ⑧사회보험료 ⑨전문인력 채용지원 ⑩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⑪사회적가치 공유·확산 환경 조성
⑫기타(내용기입:)

12-4.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에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는 정부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인건비 ②사업개발비 ③경영컨설팅 ④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⑤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⑥사업장·시설·장비 등 ⑦세제지원 ⑧사회보험료 ⑨전문인력 채용지원 ⑩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⑪사회적가치 공유·확산 환경 조성 ⑫기타(내용기입:)

13.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현행 법·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이 있으면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 면담조사 내용

[인건비 지원 관련]

“5년의 인건비지원 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동안 성장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될지 의문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을 지원받고 자립하기 어려움. 5년 후 일률적으로 지원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자립할 때까지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함”

“인건비 지원비율을 너무 큰 폭으로 축소함” “인건비 지원금의 차등지원 없이 5년간 지원이 필요함” “연착륙을 위하여 연도별 축소율을 완화해야 함”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을 현실에 맞게 지급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이 아닌 실제 생활수준의 임금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인건비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돌봄·보육·간병 등)분야는 계속 지원이 필요함”

“인건비 지원률을 낮추더라도 지원인원이 늘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원금액을 하향하고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음”

“자립이 필요한 시기에 인건비지원이 종료되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됨.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기업을 평가하여 자립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추가 인건비 지원을 해 주면 좋겠음.”

“확실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업종별로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저희 업체는 2014년 6월에 인건비지원이 만료됨.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인원감축도 고려 중임. 취약계층에게 만이라도 인건비지원이 되어서 고령자, 여성가장 등 이런 분들이 설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함”

“최근 인건비 지원 비중을 줄이고 간접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에 관한 보완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

“인건비 직접지원은 기업의 자립성을 해치므로 지양해야 함. 오히려 사업개발비, 세제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함.”

“근무형태 및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지원이 필요함”

“지원조건인 취약계층 비율을 맞추느라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취약계층을 50%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회사 사업특성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사회적 목적 유형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면 좋을 것임.”

“산술적 형평성 보다는 사업의 내용 및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함”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 수준 등을 동종업계 임금 통계와 비교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필요가 있음.”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 요망함”

“인증은 받았지만 인건비 지원은 받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함” “인건비 지원은 취약계층의 고용률 또는 유지율 등 실적에 따른 지원이 되어야 함.”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한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예비사회적 기업부터 출발한 기업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사업개발비 지원 관련]

“지원금 사용 항목의 경직성이 문제임.” “사업개발비는 용처를 정하지 말고 적절한 평가지표를 통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되었으면 함. 용처를 정해 주는데 실제 현장과 매칭이 잘 되지 않음”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자산취득성 경비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시설기반이 열악한 사업장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시설·장비 구입비가 현실적임” “경상비성 지원을 자본보조비성 지원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발비와 R&D는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포장디자인 등의 사업개발비가 필요하며 디자인과 함께 포장재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함”

“지출항목에 시설비, 장비 등 구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발을 위한 비용보다는 대부분 홍보마케팅 비용 중심으로 사용됨. 다양한 분야(시설 및 장비 구입 등)에 대한 개발비 지원이 필요함.”

“정착된 업체에 대하여는 성장기반 확립을 위한 개발비 지원이 필요함”

“나눠주기식, 단기적 효과에 치중한 단발성 사업임.”

“사업개발에 적정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지출이나 1/n로 나누는 방식의 자금지원이 되고 있음” “예산 내에서 업체 수에 따라 나눠주기식 사업비 배분은 어처구니가 없음.”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사업비를 신청하나 지원기관에서는 지원해야할 사업체가 많아 여러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만큼 보조 받지 못함”

“예비나 인증이나 확실적인 사업개발비 지원은 무의미함. 예비 때는 사업초기 단계에 맞는 사업비를, 인증 후에는 기술개발 등 순차적인 지원이 필요함”

“음악단체들과의 거리가 먼 개발비 지원임(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개발비가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는 미흡함. 유형별로 지원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업종별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

“사회적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업체별 지원금액이 적어져 사업개발비로서의 의미가 없어짐” “소액 다수의 지원방식을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발비로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니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함”

“지원금액이 적어 대단위 사업개발이 불가함” “지원금의 최고 한도보다 실제 지원금이 너무 적음”

“KS인증비용일 경우 해당 품목당 2500~3000만원이 드는데 노동부에서는 인증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 한도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개발비로서 의미가 없음.”

“요청한 금액의 100% 지원이 필요함(요청한 금액의 50% 이상 삭감)”

“업체 실적평가를 기반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지원업체 선정심사가 연 1~2회에 불과하여 사업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자금지원이 되지 못함”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금액이 부족함” “영세한 기업인데 서류작업이 너무 많음”

“현재 5년인 사업개발비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지원금 신청 심사시 심사관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

“지원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의 전문성 등을 보완할 필요 있음. 전문가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이고, 어려운 사회적기업이 많기는 하겠지만, 신청한 사업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심사방법과 심사위원들이 있어야 함”

“경쟁응모, 일괄응모 방식이 아닌 상시 접수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사업 개발비 신청과 선정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음”

“사업개발비 신청사업에 대한 기업별 프리젠테이션 등이 없거나 1,2분으로 매우 짧음. 최소 5분 10분정도의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으로 사업개발비 신청기관의 입장을 제대로 들어보고, 또한 사회적기업들이 사업개발비를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하는 모습을 점검하는 기회이자 과정으로 여겨지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경영컨설팅 지원 관련]

<컨설팅업체의 전문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잘 모르는 곳에서 컨설팅을 함.” “누가 누구 경영컨설팅 하는 건지 의문이 감”

“전반적인 사회적기업을 잘 이해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함” “꼭 필요할 때에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컨설팅해줄 수 있는 컨설팅 기관이 필요함”

“컨설팅업체의 전문성이 부족함. 컨설팅업체 선정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필요

가 있음” “업체에 필요한 컨설팅 요구에 맞는 컨설팅 업체를 맞춤형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함”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컨설턴트의 컨설팅이 필요함” “사회적 기업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가 필요함”

“컨설팅업체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컨설팅업체 자료가 필요함” “사회적기업 경영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컨설팅의 내용>

“업체 특성에 맞지 않는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컨설팅이 많았음”

“사회적기업에게 적합한 경영컨설팅이 되어야 함” “컨설팅 내용이 주로 일반기업 성향에 맞는 내용임.”

“단순 회계 등에 관한 내용과 단기간의 분석으로 업체의 시장진출, 성장 등에 관한 컨설팅이 될 수 없음. 특히 초기 경영컨설팅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업체에 맞는 전문성 있는 컨설팅이 필요함” “사회적기업의 실상에 맞는 컨설팅이 필요함.”

“현장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요청함. 컨설팅 신청 시 즉각적인 실시가 필요함”

<컨설팅의 실효성>

“우리 업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은 실효성이 없었음.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기에 급급한 컨설팅이었다고 생각함.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되도록 사전 점검과 감독이 필요함”

“회계운영 방법 등에 약간의 도움은 되나 효과적인 도움은 되지 않음”

“기초 컨설팅은 도움이 거의 안됨”

“형식적이고 보고서 위주의 경영컨설팅이어서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하고 경영에 도움이 안됨.”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초기에 지원 후 성과가 있으면 확대·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일정기간 회사에 상주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컨설팅과 관련된 사업 추진시 비용까지 보조해 주었으면 함” “지원금액이 너무 적음.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없음. “일선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부족함”

“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는 우선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회적기업 관련 정부기관의 담당자 외에 타부서에서 직원들이 우선구매 정책에 대해 잘 모르

고 관심이 없음” “공공기관의 인식이 낮다보니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음”

“사회적기업이라고 특별히 우선 구매나 문의 등이 오지 않음. 오히려 기존사업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탈락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문화예술 및 교육분야의 공공구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도움을 느끼지 못함. 가장 내실 없는 제도인 것 같음”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음”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에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실질적인 구매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적극적인 홍보와 의무구매제도가 필요함”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관리가 필요함”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외에 일반기업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 주었으면 함.”

“공공기관 입찰 참여 기준이 과도함” “조달물품 품목에 대해서 우선구매가 되도록 하여야 함”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수주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함”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구매를 정부 예산의 일정부분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하고, 입찰시 입찰 점수 부여를 의무화해야 함.”

“위탁사업 등 특정분야를 개발하여 공공구매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입찰조달 분야도 금액제한이 아닌 상품제한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함”

“용역 및 사회서비스 부분의 공공구매가 가능하도록 요청함”

“업종별 우선구매가 있어야 함. 현재는 특별 업종에서 대해서만 우선구매 지원이 되고 있는 구조임.”

“공공구매제도에 영세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질 강화가 필요함”

[판로개척 지원 관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판로개척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현재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판로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법령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음”

[자금대출 관련]

“사회적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대출이 용이하지 않음.”

“첨부 서류 등 대출 방법과 대출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함.”

“사업의 아이디어나 기획력보다는 사업주의 개인 신용을 주로 보고 있음”

“자금대출 신청시 일반기업 대출기준과 별 차이가 없으며 이율도 정책자금 치고는 높은 편임”

“대출의 문턱을 좀 더 낮추고 이자율도 낮출 필요가 있음. 자금 대출 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재무상태를 보고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재무상태가 대부분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함.”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대출조건 간소화와 신용보증제 확대가 필요함”

“보증을 해야 대출이 되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힘들. 국가에서 보증하여 대출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과연 사회적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들 정도로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로움.” “대출조건 까다로워 일반 시중은행에서 일반금리로 대출받게 됨”

“대출금액 상향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가 필요함”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자금지원책임.”

“시설·장비 투자와 연계된 자금대출 지원제도가 필요함”

“성장가능성 및 생산성 증대 등에 대한 심사기준이 금융지원에 반영되어야 함”

“사회적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 완화가 필요함”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함” “사회적기업에 맞는 대출정책이 필요함”

[사업장, 시설비 및 장비 지원 관련]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시설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시설장비 지원이 절실함.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시설장비가 부족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가 어려움”

“현재 이 항목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건비보다는 시설·장비의 지원이 꼭 필요함”

“시설·장비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고정비 감축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지원이 거의 없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름. 지원제도 관련 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미비함”

“금융과 연계하여 큰 규모의 소요자금(땅과 건물)을 해결해 주었으면 함.”

“매년 일정부분 시설장비 지원책이 있었으면 하고, 협업단지 등을 개발하여 싸

게 분양해 주었으면 함.”

“사업개발비를 사업장, 시설 및 장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함”

“사회적기업은 이익금으로 시설비 투자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함”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세제지원 관련]

“실질적으로 세제지원이 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없음”

“영세 사회적기업은 세제 지원의 혜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음”

“세제지원 혜택은 한시적이 아니라 인증되어 있는 기간 동안 기간제한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다양한 세제지원을 추가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 50%감면이 있으나 인건비 종료 후 경영난이 심하므로 100% 면제 혜택이 필요함”

“부가세 면세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인건비위주의 업종의 경우는 부가세율 감면이 필요함”

“청소용역비(인건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건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전환 요청함.”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음. 부과세 50%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취약계층 고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기간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지원기간을 좀 더 연장해주었으면 함(약 10년 정도)”

“사회적기업은 자생력 확보가 어렵고 취약계층의 생산성이 높지 않으므로 인건비 지원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함”

“4대보험 지원은 계속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사회적기업 사업자 부담금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인건비 직접지원보다는 사회보험료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음”

“사회적일자리 약정인원 대비 고용유지비율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산재보험료를 현실화 시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전문인력의 4대보험료도 지원해 주기바람”

[전문직 채용지원]

“정부지원의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됨”

“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끊기더라도 성장기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지원은 절실함”

“낮은 금액에 올 전문인력이 많지 않음”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임금지원이 필요함” “전문인력 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문인력 지원은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면 함.” “지원기간을 10년 정도로 연장해 주었으면 함.”

“사회적기업 지원기간 5년 끝나고 난후 대부분의 기업에서 전문인력 채용 능력이 부족함”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문제가 발생함.. 전문인력의 자격조건을 조금 완화하고 전문인력 지원금의 대폭 상향이 필요함.” “너무 요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활용 못함” “청소관련 전문가인력은 경력증명서 확인이 어려워 현실과 맞지 않음.”

“실력있는 전문인력의 유인 기제를 강화해야 함”

“전문성을 고려하되, 더 많은 채용 지원이 필요함”

“매출실적 등 평가에 따라 전문인력 지원 수를 늘려주는 방안을 제안함.”

“업체특성에 맞는 인력채용 지원이 필요함” “전문인력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서류에 적합한 전문인력보다는 사업장에 맞는 인력이 중요함”

[교육훈련 지원 관련]

“재직자훈련과정을 보면 유형별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업무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함.” “전문적인 기술교육이 필요함”

“획일적인 방법과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실정에 맞는 교육 방법 및 내용이 필요함” “참여자들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교육이 필요하지만 사업장에 인력이 없어 받지 못함”

“업종별 직업능력개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중간지원조직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인지도가 낮고, 재정자립도와 전문성이 취약함”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 간 파트너십이 없고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중간지원조직 간에도 상호 교류나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음”

“중간지원조직은 다양성 보다는 역량강화가 더 중요함”

“지방자치단체 별로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들고 있어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이에 따라 효율을 위한 통합이나 예산지원 등의 개선이 필요함”

“중간지원조직의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파트너십 관계 형성이 필요함”

“중간지원조직이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또 하나의 행정간섭이 될 수 있음”

[기타 의견]

“사회적기업의 창업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없음”

“설립단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이 부재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이후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경우 고용과 매출실적 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사회적기업 창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의지와 사업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을 창업단계에서부터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를 보면, 297건 31억 원에 이름”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연 2회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외에는 별다른 사후관리 대책이 없음”

“인증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원금 사용 점검 등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여 지원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현행 인증방식을 등록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와 지원제도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인증 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됨, 주기적인 심사가 필요함”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사회적기업 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반기업의 무분별한 제도 진입도 문제임”

“5년 동안의 양적 확대에 비하여 질적 성장은 미흡함. 질적인 측면의 강화가 필요함”

“성공한 사회적기업 중 유사성 있는 기업별로 멘토링단을 구성하여 초기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거점형 비즈니스와 지역 및 공간중심의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 분야는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안됨”

“정부정책이 갑자기 바뀌어서 인력채용, 기업경영에 차질을 초래함”

“부처간 정책방향이 달라서 문제가 됨. 예를 들어 간병·가사 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려고 하고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등

취업취약계층을 활용하려고 하는 등 부처간 정책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업종에 따라 사회적기업 설립취지와 달리 다양한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엄격한 평가와 기준 확립이 필요함”
“서류제출 등 행정협조 사항과 행정 간섭이 많음”

[NARS-----

현장조사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8호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 실태와 개선과제 -친족 성폭력을 중심으로-	2013.12.31	조주은
제27호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과제 - 출입관리·시설관리·위해환경관리를 중심으로 -	2013.12.27	조인식
제26호	로컬푸드 직매장 전개 현황과 활성화 전략	2013.12.13	배민식
제25호	과학관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2013.12.2	권성훈
제24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식현황과 질 제고방안	2013.3.28	장영주
제23호	외해양식어업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2012.11.7	박충렬 배민식

현장조사보고서 제29호

발 간 일 2014년 2월 28일
발 행 고현욱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8·473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005-9558

발간등록번호 31-9735030-000666-14

© 국회입법조사처, 2014

현장조사보고서 제29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